

공무직 근로자(국도관리원) 채용 공고

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(국도관리원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일
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 채용 직종 및 인원

채용실시 기관	직종	근무예정 기관	지역 제한	채용 예정
			계	14명
익산지방 국토관리청	운행제한단속원	순천국토관리사무소 <small>(주소 :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)</small>	제한 없음	1명
		전주국토관리사무소 <small>(주소 :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)</small>	제한 없음	2명
	도로보수원	광주국토관리사무소 <small>(주소 :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기 22-16)</small>	제한 없음	1명
		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<small>(주소 : 전남 해남군 옥천면 지석로 19)</small>	제한 없음	3명
		남원국토관리사무소 <small>(주소 : 전북 남원시 이백로13)</small>	제한 없음	1명
		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<small>(주소 : 전북 무주군 적상면 무주로 1069)</small>	제한 없음	1명
		순천국토관리사무소 <small>(주소 :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)</small>	제한 없음	1명
		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 <small>(주소 : 전남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44)</small>	제한 없음	1명
		전주국토관리사무소 <small>(주소 :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328)</small>	제한 없음	3명

2 근무 조건

가. 채용기간: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(무기계약)

나. 근무시간: 주 5일, 1일 8시간

* 단,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
(**운행제한단속원**은 국토관리사무소 별 근무편성표에 따른 **교대근무**(주야비) 실시)

** 근로시간, 연장·야간·휴일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단체협약에 따름

다. 담당업무

- 도로보수원: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, 포트홀 정비, 제설·제초 작업 등
- 운행제한단속원: 관할 국도 운행제한차량 단속,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,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 (운행기록장치·차로이탈경고장치·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장착여부 확인 등)을 위한 조사,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업무 등

라. 보 수: 예산 범위 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
- 기본급(1호봉) 및 정액급식비 세전 약 201만 원(세전)
- 명절휴가비, 시간외수당 등 별도지급
- * 2023년 기준이며, 추후 변동 시 변동금액 적용

마. 후생복지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바. 기타사항: 「국도관리원 관리규정*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447호, '21.11.15.)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정함

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[<http://www.molit.go.kr>-(정보마당-법령정보-훈령.예규.고시)] 참조

3 응시 자격 (최종 면접일까지 : 2023.4.17.(월) 예정)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결격 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'23년 말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*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다.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(채용신체검사서로 같음)

라. 응시일 현재 유효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

마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)

4 우대 조건(원서접수 마감일까지 : 2023.4.3.(월))

가. 저소득층·장애인(서류전형 3% 가점)

☞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도 중복 인정하지 않음

※ 저소득층·장애인의 범위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
 -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 - ④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
- * (장애인 입증서류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
나. 자격·면허 소지자(서류전형 3~5% 가점)

- ① 건설기계정비기능사, 자동차정비기능사, 용접기능사, 전기기능사 이상 소지자(3~5%)

*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

▶ 평가기준: 자격증 취득 난이도에 따라 **기능사(3%), 산업기사(4%), 기사(5%)로 차등 부여**하되,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하여는 **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**(타분야 중복 인정)

⇒ '전기기능사'와 '자동차정비산업기사' 보유 시 '전기기능사', '자동차정비산업기사' 모두 인정 (동일분야에 미해당, 총 7% 인정)
 ⇒ '전기기능사'와 '전기산업기사' 보유 시 상위등급인 '전기산업기사'만 인정 (동일분야에 해당, 상위 '산업기사'자격 4% 인정)

- ② 1종 대형 운전면허(도로교통법 제80조, 3%)

※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

공 통	○ 우대요건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,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-----	--

☞ 우대·가점은 서류원서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(자격증으로 얻을 수 있는 서류가점 한도는 최대 20%)

5 시험 방법

가. 1차 서류 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규모의 3배수를 넘는 경우, 서류전형 합격자는 3배수까지 결정
- * 단, 서류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

나. 2차 면접 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공고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 국가관 및 사회성, ②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,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, ④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등 4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5점), 중(3점), 하(1점)로 평정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
- * 불합격 기준: 면접시험위원의 평점 중 '하'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

다.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최종합격자 선발
- *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면접 고득점자순으로 차순위자에 대한 추가 선발 진행
- ** 당해 채용시험의 근로계약 포기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 응시원서 접수

가. 공고기간: '23.3.24.(금)~4.3.(월) (접수는 3.28.(화)부터 공고 마감일까지)

나. 접수방법: 방문 접수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(09:00~18:00)에만 가능하며,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

*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배부

**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“도로보수원/운행제한단속원(응시직종 택) 응시원서 재중” 표기.

다. 접수처 주소: (54619)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(남중동)
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

▷ 교통안내

익산역	■ 버스 20, 24, 24-1, 66, 67, 67-1, 76, 80, 101	이리공고 후문 정류장 하차
버스터미널	■ 버스 101, 104	→ 도보 5분 거리



7 시험 일정

가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'23. 4. 11.(화) 예정

나. 면접시험: '23. 4. 17.(월) 예정
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'23. 4. 21.(금) 예정

* 근무지 배치시점은 사무소 현원(퇴직자 등) 사정에 따라 5월 이후 유동 배치될 수 있음

☞ 합격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/iroom>) 게시 개별통보

*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

8 제출 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서식 제1호) 1부
- ② 응시원서(별지서식 제2호) 1부
- ③ 이력서(별지서식 제3호) 1부
- ④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제4호) 1부
-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(별지서식 제5호),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활용 동의서(별지서식 제6호)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서식 제7호) 각 1부
- ⑥ 주민등록초본 1부
*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
- 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함)

- ① 저소득층 증명서 1부
-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- ③ 가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
※ 모든 발급서류는 **공고일 이후 발급분**에 한하여 인정

9 기타 유의사항

- 1인당 1개 모집단위 1개 직종에만 응시 가능하며, 중복 지원(직종·모집단위)한 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현장에서 복사, 대필 등의 업무는 하지 않으니 접수 시 필요한 서류, 자격증 및 관련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* 특히, 채용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상 청탁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, 코로나19 관련하여 입원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, 검사 진행 중인 자, 면접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, 응시 원서상 기재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응시원서 작성요령

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)

-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.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제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(☎063-850-91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◎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1. 「※응시번호」: 기재하지 않음
 2. 응시직종: 운행제한단속원 / 도로보수원 중 희망하는 직종 작성
 3. 응시 모집단위: **응시자가 희망하는 모집단위 1개 선택**하여 기입
 - 운행제한단속원: 순천국토관리사무소,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중 1개
 - 도로보수원: 광주국토관리사무소,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, 남원국토관리사무소,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, 순천국토관리사무소,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,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중 1개
 4. 주 소: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(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)
 5. 복수국적 해당여부: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
 6. 병역사항: 필, 미필, 면제, 해당없음 중 1개 선택
 7. 성명·생년월일·전자우편·전화(휴대전화): **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**
 - 생년월일 작성 예시: 19○○년 ○월 ○일
- ※ 서류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응시번호 부여)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며,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

